

「2024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 사업을 위한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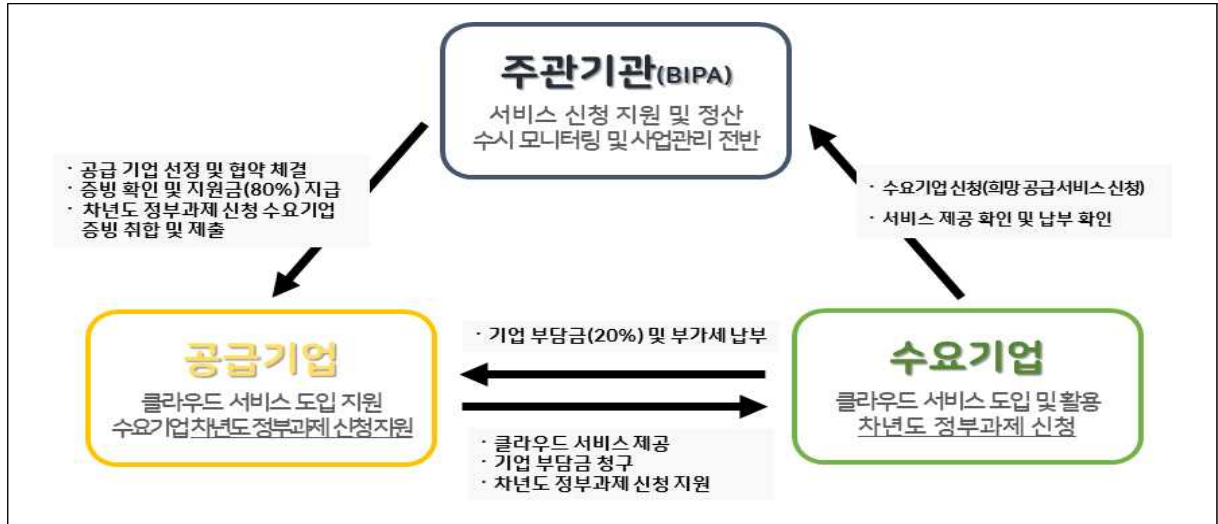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1 모집개요

- **사업명** :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4. 8. 1.(목) ~ 8. 22.(목)
- **신청대상**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
장소재지 본점 기준 부산 소재 중소기업(수요기업)

- * **공급기업** : 본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으로, 자체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을 수요기업(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제공·판매하는 기업
- * **수요기업** : 공급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솔루션)을 도입 및 이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 90백만원
 - 지원비용 : 수요기업 1개사 당 최대 150만원
 - ※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80%(최대 150만원)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 서비스별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도입 서비스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기간 : 사용시작일(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 ※ 공급기업의 서비스 이용 정책에 따라 제공하며, 제공 방법 등 상이할 수 있음



□ 공급기업 선정 및 공급 서비스 Pool 기반 수요기업 선정

- 선정 공급기업 Pool 기반 지역 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희망 기업 모집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추진 및 수요기업 선정

□ 지원사업 추진

- 수요기업 희망 서비스 공급기업 매칭 및 3자 협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 도입 지원
- 사업 기간 종료 시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관기관 시행 만족도조사 필수 참여

□ 사업비 정산

- 수요기업 서비스 도입 지원 증빙자료(공급기업 취합 및 제출) 기반 해당 공급기업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은 최대 80%로, 수요기업 측에서 현금 20% 부담 ※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수요기업에서 부담
 -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에 대한 증빙은 계약 종료 시까지 제출(공급기업→주관기관)

□ 차년도 정부지원사업 신청

- 수요기업 차년도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을 위한 공급기업의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증빙 제출(공급기업 취합 및 제출, '25년 중 추적조사)

3

제공 서비스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소개자료는 별첨 자료 확인, 기업명 가나다 순

No.	기업명	서비스명
1	(주)더존비즈온 부산지사	홈피스올인원팩 1
2	주식회사 핑킹프렌즈	TAS(AI 올인원 서비스)
3	주식회사 시우이엔티	이지판매재고관리 클라우드
4	주식회사 씨앤에스솔루션	proERP Cloud + 회계 Lite
5	주식회사 아이피나우	비즈내비
6	주식회사 에코마린	다목적 해상물류 플랫폼
7	주식회사 엠투코리아	스마트 수출입물류 업무지원 및 세관신고 서비스
8	주식회사 팀리부뜨	askyour.trade(무역업무 자동화 플랫폼)
9	(주)오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운영 솔루션)
10	쿠키	클라우드 및 DB 기반 업종직무별 업무자동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3인 이상인 사업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① 당해 연도('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 클라우드 바우처)등 유사 정부과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의 공급기업과 동일 기업의 솔루션을 이미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은 신청 불가(단, 타 기업 솔루션은 신청 가능)
- ② 전년도('23년) 유사 성격 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기간이 일부라도 중복될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본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단, 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신청 가능)
-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외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 ⑤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 ⑦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⑧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③, ④의 '예외' 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5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구분		주요업무
주관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BI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등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추진
공급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하여 제공·판매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및 도입 지원 ▶ 수요기업 차년도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참여 지원
수요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클라우드 서비스 매칭 도입 지원기업 ▶ 주관기관 및 공급기업의 지원에 따라 차년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속 사용

□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주체	주요 내용	일정(안)
수요기업 지원사업 신청	(BIPA) (수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 B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게시 및 메일링 · 공급기업 Pool 내 자사 적합 서비스 선택 신청 	8월 1주 ~8월 4주
공급-수요기업 매칭	(평가위원회) (BIPA-공급기업-수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BIPA ESG·성과평가팀) 및 평가 준비 · 수요기업 신청서 서류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매칭 및 3자협약 체결 	~9월 1주
서비스 도입 지원	(공급기업 →수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납부분(기업부담금(20%) 및 부가세) 납부 확인 및 서비스 상품 제공 ·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 차년도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 준비/지원 	9월 2, 3주 ~ '25. 3월 * 지원기간 6개월
사업비 정산	(BIPA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입금 된 수요기업 납부분에 대한 증빙 제출 · 증빙 확인 후 공급기업에 지원금 지급 · 수요기업 우수사례 취합 	~ 12월 4주
차년도 추적조사 및 자료 제출	(공급기업 →BIPA)	·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 증빙 취합 및 제출	'25년 상반기 중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안내 및 평가기준

□ 제출서류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고

구분	제출내용	제출방법
①	신청서(*수요기업신청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참여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일체)	별도 첨부 서식 활용 작성 및 날인, PDF 제출 연 내('24년) 발급분, 제출서류 순번에 맞게 정리하여 1개 PDF파일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 시 제출)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4대 보험 가입자명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모든 날인 문서는 날인, 서명 문서는 자필 서명 必

※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 양식 미준수 시 평가 과정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방법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E-mail 전자문서 접수
 - 접수처(E-mail): cloud@busanit.or.kr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년 8월 22일(목), 18:00 까지
- 문의처

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전략사업단	김지혜 대리	051-749-9487
			jyekim@busanit.or.kr
		김연정 대리	051-749-9376
			kyj@busanit.or.kr

□ 평가기준 : 서류심사를 통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 60개사 선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원 적절성 및 필요성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수요기업 업종과 희망 솔루션 매칭 적절성 - 지원사업 신청배경의 명확성 - 수요기업의 서비스 도입 필요성
서비스 활용 계획	- 서비스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서비스 활용에 따른 수요기업 성장 기대도 (최초 도입에 따른 성장 가능성 혹은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 등)

※ 선정 안내는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대표자/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예정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사업 관리지침 및 공고문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내용 확인하여 제출, 사전 제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완료 시에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해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 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솔루션 사용 이용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사업비를 환수하며 수요기업 부담분에 대한 환불 등은 공급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따름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사업신청서 상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향후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등 수령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입 서비스에 대한 확인 및 정산 등을 위한 점검 및 자료 제출보완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주관기관 및 공급기업에 협조하여 본 지원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된 수요기업은 차년도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의무사항)을 위해 공급기업의 요청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또한 사업(협약)기간 이후에도 매출액, 창출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 활용 조사/설문 등에 대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안내는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대표자·총괄책임자(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이메일주소, 연락처 변경 등의 내용을 주관기관에 공유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음
- 수요/공급기업 중 사업을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주관기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폐업, 그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선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주관기관에 사전 보고 후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업 지원사업 포기/선정취소 이후 본 사업 지원규모의 잔여분만큼 평가대상 기업(신청 수요기업)의 후순위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이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한 경우, 공문 제출 해당 월까지 정상 사용으로 간주하며 다음 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상품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환수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기업이 부담하거나 수요기업-공급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정산해야 함